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확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이용자 편의도모
- 나.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감면대상자동차 확대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확대 설치로 장애인 편의도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확대(안 제5조)
- 나.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(안 제5조의2)
 - 19:00 ~ 24:00 ⇒ 18:00 ~ 24:00
- 다.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(안 제6조)
 - 투표참여자 주차요금 2,000원 감면
 -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최초 60분에 한하여 50% 감면
 - 2000년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주차요금 50% 감면
- 라. 부설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확대(안 제20조)
 - 장애인 주차구획 2% ⇒ 3%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주차장법」, 「주차장법시행령」
- 나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 : 입법예고 의견없음(2010. 4. 30 ~ 5. 19)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과 같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

제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와 같다”를 “각 호와 같으며 적용대상 주차장 및 시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,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,000원 경감한다.
7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8.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 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)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한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2퍼센트”를 “3퍼센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 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<u>각호와</u> <u>같다</u>. 다만,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 한다</p> <p>1. ~ 5.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④----- ----- <u>각 호와</u> <u>같으며 적용대상 주차장 및 시기는</u> <u>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와 「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 른 선거에 있어,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(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함)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,000원 경감한다.</p> <p>7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 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 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8.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)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</u></p>
<p>⑤ <u>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</u>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⑤ <u>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의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0조(장애인 전용주차구역) ① 영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<u>2퍼센트</u>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20조(장애인 전용주차구역) ----- ----- ----- ----- <u>3퍼센트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76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6. 4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6. 9(수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0. 6. 15(화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확대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
-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감면대상 확대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획 확대 설치로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확대(안 제5조)
-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 연장(안 제5조의2)
 - 19:00 ~ 24:00 ⇒ 18:00 ~ 24:00
-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(안 제6조)
 - 투표참여자 주차요금 2,000원 감면
 -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최초 60분에 한하여 50% 감면
 - 2000년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으로 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주차요금 50% 감면
- 부설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 확대(안 제20조)
 - 장애인 주차구획 2% ⇒ 3%

4. 근거법규

- 「주차장법」, 「주차장법시행령」,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성낙필)

-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-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제3호에 신설 코자하는 사항과,
 -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, 제5조의2 제2항의 운영시간을 현행 19:00~24:00까지를 18:00~24:00로 개정하는 사항과
 - 제6조제4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
 -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여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3개월간 2,000원를 경감하는 사항과,
 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안 및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의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50%를 경감하는 사항과,
 - 우리시의 출산장려사업 일환으로 2000년 이후 출생자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% 경감하는 사항 등을 신설코자 하며,
 -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%~4%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, 현행 2%→3%로 확대 개정코자 하는 사항 등이며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